

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0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례로 「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- 마.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8~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※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,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조건부 적정

※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, 위원 구성(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규정)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 추가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4. 12. ~ 5. 2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행정국 대외협력과 김근형 (☎ 2133-6658)

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다른 지방자치단체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를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
제7조(기금관리)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 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대외협력과장
3. 기금출납원: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
4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

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

2. 위촉직 위원

가. 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

나. 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2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 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 기금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,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4. 작성자

- 대외협력과 주무관 김근형(02-2133-6658)